행정안전부	보 도 자 료	작성과	안전사업조정과
	2018년 1월 3일(수) 조간 (1. 2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과	과 장 김영훈 소방령 최재민
		연락처	044-205-4160 044-205-4161

소방장비 노후한 곳에 소방안전교부세 더 많이 지원

-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4,172.6억 원, 전국 시도에 교부 -

□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**총 4,172.6억 원**을 29일 전국 시·도에 통보하였다.

○ 이는 전년(4,588억 원) 대비 **약 9.1% 감소**한 금액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%인데, **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감소함**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.

□ 소방안전교부세는 용도별로 특수수요*인 소방헬기 보강(230억, 서울·부산) 및 안전체험관 건립(185억, 7개 시도)에 **415억 원**을 투입하고, 나머지 **3,757.6억 원**은 노후·부족 소방장비 교체·보강,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, 안전관리 강화 등에 투입한다.

* 특수수요 :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소방·안전사업(전체 교부액의 10%이내)

□ 특수수요를 제외한 시·도별 **평균 교부액은 약 221억 원**으로, 총액 감소에 따라 '17년(259억) 대비 △38억(14.7%↓) 감소하였으며,

○ 교부액 **최고** 시·도는 **경기(405.6억), 서울(274.6억), 경남(269.0억)** 순으로, 경기·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·보강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투자소요가 높았으며, 경남의 경우는 소방관련 정책사업비 투자를 늘려 소방시설 확충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.

○ 교부액 **최저** 시·도는 **세종(63.7억), 대전(153.5억), 울산(183.7억)** 순으로, 타 시도에 비해 주력 소방차량, 주요 구조·구급장비 등 노후·부족 소방장비 투자소요가 적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.

○ 이는 노후·부족 소방장비 개선소요(18%), 소방시설 확충노력률(16%),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(10%) 등 교부액 산정시 반영비율이 높은 지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.

< 18년 주요 지표별 교부액 비교>

구 분(억원)	상위시도	평균	하위시도(세종제외)
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*(676)	**경기(143)**, **서울(61)**, 강원(61)	40	**대전(12)**, **울산(13)**, 광주(19)
소방시설 확충노력률**(601)	**경남(48)**, 전북(46), 강원(42)	35	대전(25), 광주(29), 충남(29)
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율***(375)	전남(31), 제주(28), 경북(28)	22	대전(10), 전북(16), 울산(19)

*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: 주력 소방차량, 개인보호장비, 주요 구조·구급장비 교체보강 수요

** 소방시설 확충노력률 : 지자체의 소방관련 정책사업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지표

***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: 중점사업에 우선 투자하고, 교부세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지표

□ 한편, **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% 이상**을 노후·부족 소방장비 개선, 소방시설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.

※ 당초 15~17년까지의 사용특례를 20년까지 연장

□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"앞으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확대 투자하고,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·안전관리 강화 등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·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."라고 밝혔다.

< 소방안전교부세란? >

▸ (개 념) '15년부터 지자체의 소방·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교부세 (17개 시·도별 교부)

▸ (규 모)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%, 2015년 3,141억원, 2016년 4,147억원, 2017년 4,588억원(담배반출량에 따라 변동)

▸ (교부기준) 10% 이내 특수수요 지원, 잔여재원은 소방·안전 투자수요(40%), 안전관리 강화 노력(40%), 재정여건(20%)을 기준으로 교부

붙임1 **2018년도 시·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**(단위 : 억원)

시 · 도	2017년 교부액 (A)	2018년 교부액				'17년 대비 증감액(B-A)* (증감율%) * 특수수요 제외
		총 교부액 (B+C)	교부기준에 따른 교부액(B)	특수수요 지원금액(C)		
				소방헬기	안전체험관	
합 계	4,588	**4,172.6**	3,757.6	230	185	△645.9 (14.7%↓)
서 울	293	389.6	274.6	115		△18.2 (6.2%↓)
부 산	249	344.3	229.3	115		△20.1 (8.1%↓)
대 구	278	217.3	217.3			△60.9 (21.9%↓)
인 천	206	211.8	201.8		10	△4.7 (2.3%↓)
광 주	249	196.9	186.9		10	△61.8 (24.8%↓)
대 전	238	153.5	153.5			△84.9 (35.6%↓)
울 산	226 * 체험관 10억 포함	273.7	183.7		90	△32.0 (14.8%↓)
세 종	83	63.7	63.7			△18.9 (22.9%↓)
경 기	438 * 체험관 10억 포함	425.6	405.6		20	△22.2 (5.2%↓)
강 원	365 * 헬기 64.6억 포함	258.2	258.2			△42.6 (14.2%↓)
충 북	253	201.0	196.0		5	△57.3 (22.6%↓)
충 남	263	215.3	215.3			△48.1 (18.3%↓)
전 북	252	211.6	211.6			△40.6 (16.1%↓)
전 남	299	251.8	251.8			△46.7 (15.7%↓)
경 북	282	244.5	244.5			△37.5 (13.3%↓)
경 남 (창원소방)	293 (54) * 체험관 5억 포함	294.0 (39.3)	269.0		25	△19.4 (6.7%↓)
제 주	320 * 헬기 90억, 체험관 5억 포함	219.8	194.8		25	△30.0 (13.3%↓)

* '18년 교부기준에 따른 교부액 3,757.6억(총교부액 4,172.6억 - 특수수요 415억)은 '17년 교부기준에 따른 교부액 4,403.6억*(총교부액 4,588억-특수수요 184.6억) 대비 △646억(14.7%↓) 감소

붙임2 **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**

□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

구 분	소방분야 기준	비율(%)	안전분야 기준	비율(%)
소방·안전시설 투자소요(40)	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비용	18	지방도로 위험도	5
			지방하천 위험도	4
	소방출동비율	4	안전지수 소요비율	3
	소방공무원수	4	안전신고 비율	2
노력도(40)	소방시설 확충노력률	16	안전시설 확충노력률	6
			안전지수 개선비율	2
	소방예산 확대노력률	5	안전신고 개선율	1
	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			10
재정여건(20)	재정 자주도			20

※ 소방안전교부세의 10%이내에서 특수수요(대규모 사업) 별도 지원

□ 대상사업

분야	구분	대 상 사 업
소방 분야	중점 사업	① 주요 기동장비(소방차량) ② 보호장비 ③ 정보통신장비 ④ 구조장비 ⑤ 구급장비 ⑥ 긴급구조 시스템 및 장비확충·보강 ⑦ 소방교육 훈련기관 시설·장비 보강 ⑧ 소방안전교육
	재량 사업	① 소방헬기 등 기타 기동장비 ② 안전체험관 건립 ③ 측정장비 ④ 소방출동로 확보(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) ⑤ 소방사각지역 화재진압장비 ⑥ 양보위반 단속장비 ⑦ 노후 소방관서 개선 ⑧ 소방관서 보건 안전관리 강화 ⑨ 재난대응역량강화 소방훈련
안전 분야	중점 사업	①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 ② 교통안전시설 ③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④ 하천 유지관리 ⑤ 공유림 안전정비 ⑥ 재난관리자원 ⑦ 시설물 안전점검·진단 ⑧ 특정관리시설 점검 ⑨ 저수지·댐 안전점검 ⑩ 해수욕장 안전관리 ⑪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⑫ 지역안전관리활동 강화 ⑬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
	재량 사업	① 안전체험관 건립 ②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③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④ 도시공원 안전유지관리 ⑤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 ⑥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⑦ 터널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 ⑧재해지도 ⑨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⑩급경사지 정밀진단 ⑪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⑫펌프장 유지·관리 ⑬주민대피시설 운영·관리 ⑭지역민관협력위원회 활성화 ⑮재난대응역량강화 안전훈련 ⑯감염병 안전지수 개선사업 ⑰낚시어선 안전관리